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에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며,
- 사무의 위탁을 위한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

다.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의회의 동의 등)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신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과 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행정안전부)>

라.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회 동의, 계약 체결, 비용 부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 사무의 공공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공공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위탁의 정산 및 실적보고, 사무편람 작성, 지도·감독 및 감사,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 회계연도 및 수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비용의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를 자체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바.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 사.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 지도·감독과 감사의 결과 및 조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상설)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 ※ 현행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개정>
- 수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 <예외 규정 신설>
- ※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
-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차.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과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8조). <개정>
-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15일 경과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이 부결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카. 민간위탁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및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개정>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는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파. 민간위탁 계약의 취소와 수탁기관 응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610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7일
발의의원 : 김영희, 장인수, 김명철,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에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며,
- 사무의 위탁을 위한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
- 다.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의회의 동의 등)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신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과 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행정안전부)>

라.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회 동의, 계약 체결, 비용 부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 사무의 공공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공공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위탁의 정산 및 실적보고, 사무편람 작성, 지도·감독 및 감사,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 회계연도 및 수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비용의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를 자체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사.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 지도·감독과 감사의 결과 및 조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상설)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 현행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개정>
- 수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 <예외 규정 신설>

※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

-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차.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과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8조). <개정>

-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15일 경과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이 부결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카. 민간위탁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및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개정>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는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민간위탁 계약의 취소와 수탁기관 응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취서
 - 「**예**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제117조 (현행 제104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현행조례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장 공공위탁

제5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공공위탁 성과보고서(재계약, 재위탁의 경우)
9.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제8조(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위탁 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시장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위탁 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공위탁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공공위탁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위탁 계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위탁

제18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19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탁 사무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⑦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18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제22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국·소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6조(민간위탁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의 징수 및 처리방법
7.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9.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민간위탁 재계약 등)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0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2. 제33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3. 제34조 감사 결과
4. 제35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른 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위탁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 비용 등은 위탁받은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사무 또는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민간위탁 사무편람)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민간위탁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민간위탁 사무처리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위탁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한하여 제1항의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이며,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시설관리 업무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민간위탁 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33조 지도·감독 및 제34조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5조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

7.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의 원상회복
2.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관련 서류 일체 반환
4.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 기관 고발 등 조치
5. 그 밖에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3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응모 제한) 제36조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

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44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오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③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④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⑤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⑥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⑦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⑧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⑨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⑩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현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현행조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위탁사무의 기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등

제5조(계약기간) 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위탁절차 및 방법

제6조(위탁계획)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의 등)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기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계약)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내용
4. 위탁계약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련분야 전문가
3. 이용시설 대표자
4. 사회단체 회원
5.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회의) 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관리운영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자부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부담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

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에 완료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다.

⑤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설 등의 기부채납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최초 민간위탁을 제외하고, 기부채납된 금액과 약정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재계약 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성과평가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의 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계약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6.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시설 및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계약 취소 후 3년 이내에는 시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던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44조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④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⑤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⑥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⑦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⑧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⑨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⑩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⑪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⑫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⑬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②⑮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㉞ 오산시 청소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㉟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㊱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㊲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㊳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㊴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㊵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㊶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